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4월 11일) 공휴일 지정〉
■ 추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561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추미애의원 등 32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3.
3. 회부연월일 : 2024. 9.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민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다고 명시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권 회복을 위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1919년 4월 11일 수립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임.

하지만, 친일 세력은 일제 강점기 동안의 친일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기 위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여 임시정부의 상징성을 지우려 하고 있음.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임.

왜곡된 친일 행위를 비판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과제임.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길이 보전하고자 함(안 제2조

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4월 11일)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로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¹⁾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4월 1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u>광복절</u> , 개천절 및 한글날 2. ~ 10. (생략)	제2조(공휴일) ----- --. 1. ----- ----- <u>광복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u> ----- 2. ~ 10. (현행과 같음)

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4월 11일)을 국경일로 규정하는 내용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60호, 추미애의원 대표발의, 2024. 9. 3. 발의)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

2. 검토의견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4월 11일)은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정부 주관 기념일로 규정되어 있으나,²⁾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³⁾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⁴⁾에 따른 공휴일로도 지정되어 있지 아니함.

개정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4월 11일)을 국경일로 규정하는

2)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할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해야 한다.

[별표1]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1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 11.	국가보훈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행사를 한다.

3)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전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4월 11일)을 국경일에 해당하는 기념일로서 법정 공휴일로도 지정하려는 내용임.

법정 공휴일을 신설하는 것은 공휴일 제도의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고유한 입법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으로,⁵⁾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4월 11일)의 국경일 여부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되, 공휴일 지정 내지 확대에 따른 입법적 영향에 중점을 두고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4월 11일)을 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른 긍정적 효과로, 국민들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국경일 내지 기념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의 의미를 일상에서 체감하고 역사 인식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점, 공휴일 확대로 국민의 휴식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한편, 소비 진작을 유도하여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는 바, 이같은 측면에서 개정안은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반면, 법정 공휴일이 신설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⁶⁾에 따른

5) 참고로, 제헌절(7월 17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6)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

유급 휴일이 되는 바, 우리나라의 공휴일 수가 주요 국가 대비 적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관공서가 휴무함에 따라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점검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론이 제기될 여지가 있음.

<주요 국가 공휴일 수>

구분	한국	일본	미국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
공휴일 수	15일	16일	11일	12일	8일	10일	11일

자료: 인사혁신처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4월 11일)을 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우려되는 부작용 내지 부정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봄.

인사혁신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일의 공휴일 지정은 임시정부수립일에 대한 국민적 차원에서의 기념 등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공휴일 확대는 이해관계가 다양한 사안이므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주요 선진국 대비 적지 않은 우리나라 공휴일 수(15일)와 최근 대체공휴일('21년 4일, '23년 2일)을 확대해온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기념하기 위해 4월 11일을 국경일 및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우리나라 전체 공휴일 수가 적지 않고 최근 대체공휴일을 확대한 점,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2